

우주항공청 공고 제2026-0059호

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(인공위성부문) 추가 신규과제 공고

우주항공청이 추진하는 「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사업」 2026년도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5월 22일

우주항공청장 오 태 석

1.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기획 및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탐색 연구를 수행

2. 공모대상과제

- 지원대상 신규과제 목록
 - 과제별 세부 내용은 범부처통합지원시스템(iris.go.kr)에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(RFP) 참조
 - 과제별 1개 연구수행기관 또는 컨소시엄 선정

연번	과제명	기간 (개월)	예산 (백만원)
위성2-2	우주 AI 반도체 기술개발 기획연구	8	60
위성3-3	저비용 플랫폼 기반 GNSS 전파간섭 감시 저궤도 위성시스템 개발사업의 기획연구	8	70
위성3-4	LEO PNT를 위한 Inter Satellite Ranging (ISR) 기술 개발사업의 기획연구	8	70

※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평가일정 및 평가의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○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(정의) 제3호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2조(연구개발기관)에 따른 기관 및 단체

혁신법 제2조(정의) 3. "연구개발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
 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
 다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라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마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바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 사. 「상법」 제169조에 따른 회사
 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
시행령 제2조(연구개발기관) ①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아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를 말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
3.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1. 주관연구개발기관^가: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2. 공동연구개발기관^나: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3. 위탁연구개발기관^다: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(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

- 특별법 혹은 개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

○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

제6조(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)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
2.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
3.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
4.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·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5.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·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
6. 연구개발성과 창출·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
7.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제7조(연구자의 책임과 역할)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2.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, 그 경제적·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
3.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

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□ 신청 제한

- (참여제한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 또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
제59조(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(이하 "참여제한"이라 한다)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.

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(이하 "제재부가금"이라 한다)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(이하 "연구개발비환수"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주관연구개발기관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 제한

- (인건비 계상률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=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/연 급여)

**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총 과제 수행 계상률이 130%를 초과한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중 하나라도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됨

<지원제외 대상>

- 기업의 부도 • 자본전액잠식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, 신용평가등급 'BBB' 이상인 경우는 예외)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 - ※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, 유동비율 등이 지원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,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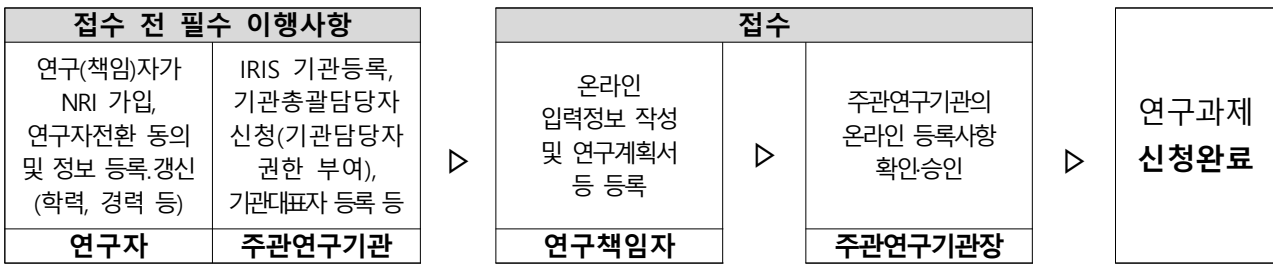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- ▶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KISTEP)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*를 통해 과제 신청, 평가 및 관리 업무 진행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<https://www.iris.go.kr>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

※ 자세한 접수 방법은 IRIS 사용 매뉴얼(연구자용 접수 매뉴얼) 참고([접수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](#))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- 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를 통한 **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**이 있으니, 과제 신청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<참고>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
[별첨]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

-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에서 연구자전환 동의를 통해 국가 연구자번호 발급, ③ NRI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등록 필수
* 경력정보의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** 최근 5년간 수행을 완료한 과제, 현재 수행·신청 중인 과제 목록
- ①, ② 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- ③ : 연구책임자만 필수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 또한 'IRIS 회원가입' 및 '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' 필수.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,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필요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유의사항

- 1) 매뉴얼 : [별첨]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- 2) 과제신청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명은 '00대학교 산학협력단'이 아닌, "00대학교"로 신청요망
- 3)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승인권한을 득한 경우, 산학협력단 과제뿐 아니라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※ 현재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만 기관정보(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)가 등록되어 있어, 접수마감까지 <00대학교>로 정보 변경 및 신청이 어려운 경우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으로도 신청가능

◆ 관련문의(IRIS 문의처):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

제출서류

- 연구개발계획서 1부(HWP)
- 기타증빙 1부(PDF)

〈제출서류 목록〉

구분		항목명
연구개발 계획서	필수제출 서류	연구개발계획서 (주관과제 제출)
		1.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*
		2.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
	선택제출 서류	3. 인건비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
		4.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(3천만원이상~1억원 미만)
		5. [해당 시]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·관리계획
		6. [협약용] 안전관리 계획 등
	7. [협약용]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·보완 대비표	
기타증빙	필수제출 서류	1.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
		2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/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		3. [해당 시]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 : Data Management Plan)
	선택제출 서류	4. [해당 시]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※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서류로 구분
		5.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

※ <http://ntis.go.kr>에서 제안과제와 최근 5년 이내 유사 과제 검색후, 해당과제에 대해 차별성 기재

※ 양식에서 [협약용]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

제안서 보완요구

-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, 제출된 제안이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곤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,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우주항공청이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
- 제안서 보완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,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시행하고, 제출된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

제안서 관련 제출자료의 반환 및 평가 및 연구관리 목적 사용
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우주항공청의 재산으로 귀속되며,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
- 우주항공청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평가와 관련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 및 연구관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음

연구계획서 분량 제한

- 50쪽 이내 권장

※ 목차 1.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~ 4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내용을 상기 분량에 맞추어 작성
 ※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5.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

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6. 5. 22(금) ~ 6. 22(월) 18:00까지
접수 기간	2026. 5. 29(금) ~ 6. 22(월) 18:00까지 *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(18시 이후 수정 또는 제출 불가)
신청 절차	연구자 접수 ▷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,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로 인정

-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연구수행기관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·승인 가능함)
-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

신청 시 유의사항

- RFP별 응모자가 없는 경우 10일간 재공고하며,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수일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음
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 ※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,
-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필수제출서류 미비, 타 과제와의 연구 내용 중복,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

-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-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최초 공고일('26.5.22) 기준임
 - 단,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
 - ※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- IRIS 접수매뉴얼 확인 방법 : **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**(<https://www.iris.go.kr>)
 - 알림/고객 → 자료실 → IRIS 사용 매뉴얼 '접수매뉴얼'다운로드

6. 선정방법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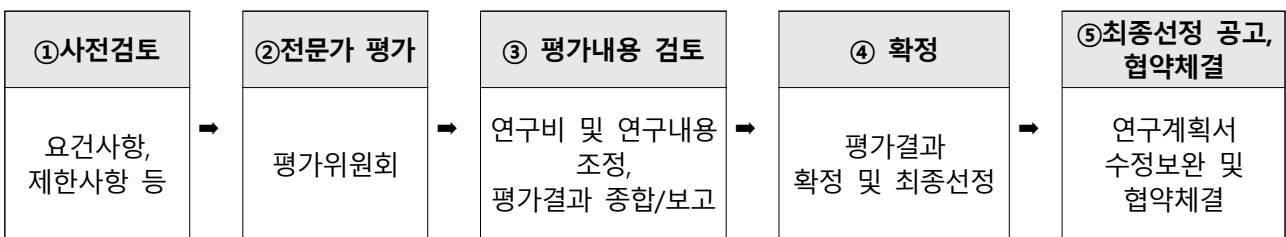
□ 평가 기본방향

- 과제 RFP별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,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

□ 평가 방법 : 발표 또는 서면평가

- '26.6월 중 평가 실시(발표방법 및 시간 등 세부일정은 추후 안내)

□ 평가 절차



① 사전검토

- 제출서류 구비 여부,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·단체·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대상 여부, 신청 자격 적합 여부, 과제와의 유사·중복성 등 검토

② 전문가 평가

- 평가방법 : 해당 연구책임자의 신청서 내용과 발표를 토대로 평가

※ 평가대상 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(필요시) 등을 통해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가능

※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

③ 평가내용 검토

- 전문가 평가 결과, 예산사정, 관련 규정 등 검토 후 과제별 예산규모 및 과제 구성 등을 조정하여 선정(안)을 수립
- 복수 응모의 경우,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

고려하여 선정

- 단독 응모인 경우,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

④ 우주항공청 확정

- 전문기관이 제출한 선정(안)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, 공정성, 연구비 대비 적정성,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선정과제를 최종 확정

⑤ 최종선정 공고 및 협약체결

-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**10일 이내**에 이의신청 가능
- 평가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

□ 평가 지표

평가항목	배점	평가 착안점
연구수행 체계/전략의 적합성	3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과제제안요구서와의 목표 부합성 및 창의성 ◦ 연구수행 전략의 구체성·타당성
연구책임자의 전문성/연구역량	2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관리능력 ◦ 연구 참여진 역량 및 인력배분의 적합성
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우주청 중장기 로드맵과 정합성 ◦ 성과물의 후속 사업 또는 타 사업 활용 가능성
연구비 규모/집행계획의 적정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연구 일정/비용/기술의 적정성
계	100	

※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,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(연구수행 체계/전략의 적합성(35점) → 기대성과 및 정책반영 가능성(30점) → 연구책임자의 전문성/연구역량(25점) → 연구비 규모/집행계획의 적정성(10점))

7. 기타사항

- 본 사업은 우주·항공 분야 사전조사, 기획 성격의 연구과제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) 제3항 제2호의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연구개발과제(3책 5공)에 포함하지 않음
- 본 사업으로 산출된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가 소유함에 따라 기업의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면제

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성과의 소유·관리)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

-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,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므로 필요시 기관유형과 관계 없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함
 - *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제4항
- 연구개발비 규모에 해당하는 위탁 정산 수수료를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반영하여야 함

<참고> 2026년 위탁정산수수료 >

※ 위탁정산수수료 = 표준수수료 + 가산금

(단위 : 천원)

연구비 규모 * 당해연도 정부출연금	표준수수료(부가세 포함) '26. 1. 1. ~ '26. 12. 31. 기간 내 신규 협약체결 과제	비고									
1억원 미만	987	* (가산금)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에 따라 가산금 부가 - 국외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은 제외									
1억원 이상 3억원 미만	1,185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동연구기관수</th> <th>가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개</td> <td>없음</td> </tr> <tr> <td>1개</td> <td>표준수수료의 10%</td> </tr> <tr> <td>2개 이상</td> <td>표준수수료의 5% (1개 기관 추가시마다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공동연구기관수	가산금	0개	없음	1개	표준수수료의 10%	2개 이상	표준수수료의 5% (1개 기관 추가시마다)
			공동연구기관수	가산금							
		0개	없음								
1개	표준수수료의 10%										
2개 이상	표준수수료의 5% (1개 기관 추가시마다)										

- 협약 후 1개월 이내 착수보고 필수
 - * 기획과정 중 검토회의, 기획현황보고는 과제담당관 요청 시 협의에 따라 실시
- **(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)**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
-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·시행규칙에 의함

※ 관련 규정 조회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,
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gaia.go.kr>)

- **(해당 시) 연구데이터 관리**
 - 본 과제 선정 시, 「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'데이터관리계획' 수립 및 제출 (계획서 첨부 양식)
 - *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 - 선정평가-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·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

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
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)

8. 향후 일정

일정	내용
2026. 5.22(금) ~ 6. 22(월)	연구개발계획서 접수(신청 마감일)
2026. 6월 중	평가 실시(발표 또는 서면)
2026. 6월 말 이후	선정통보 및 예비선정 공고
2026. 7월 초	협약 체결

※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9. 문 의 처

- (온라인 입력 및 제출관련 문의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1877-2041)
- (과제 접수관련 문의)

부문	전화번호
인공위성	055-856-5255
	055-856-5212

- (대표 문의) kasarnd@korea.kr

붙임 1. 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RFP.zip

- 별첨 1. 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연구개발계획서(양식)
2. 2026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기타증빙(양식)